

##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투자신탁(H) [주식]

□ **효력발생일** : 2015. 12. 1.

□ **정정 사유**

- (1) 클래스 추가(S, Cp, Cp-E, Cp2, Cp2-F, S-P)
-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정정 내용**

항목	정정전	정정후
<b>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b>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추가	<u>S : B9223</u> <u>Cp : B9224</u> <u>Cp-E : B9225</u> <u>Cp2 : B9226</u> <u>Cp2-F : B9227</u> <u>S-P : B9228</u>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추가	<u>S : B9223</u> <u>Cp : B9224</u> <u>Cp-E : B9225</u> <u>Cp2 : B9226</u> <u>Cp2-F : B9227</u> <u>S-P : B9228</u>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기재	<u>2014.12.28 : 일괄신고서 효력 발생</u> <u>2014.12.30 : 투자신탁 최초 설정</u> <u>2015.12.00: 클래스 추가(S, Cp, Cp-E, Cp2, Cp2-F, S-P)</u>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5. 6. 30.	<u>2015. 10. 31.</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클래스 추가	<u>S클래스(펀드코드 : B9223) 집합 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u>



		<p>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p> <p>Cp클래스(펀드코드 : B9224)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Cp-E클래스(펀드코드: B9225)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p> <p>Cp2클래스(펀드코드: B92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p> <p>Cp2-F클래스(펀드코드 : B9227)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p> <p>S-P클래스(펀드코드 : B5228)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나. 투자제한</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p>	<p>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신탁의 투자제한]</p> <p>2) 동일종목 투자</p>	<p>(2) 자산총액의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p>	<p>(2) 자산총액의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기업어음증권</u>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u>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u>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u></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나. 투자제한</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 신탁의 투자제한]</p> <p>5) 집합투자증권 투자</p>	<p>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u>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u>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p>	<p>클래스 추가</p>	<p>⑩ S클래스 : 집합투자증권에 한</p>

<p>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p>		<p>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p> <p>⑪ Cp클래스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⑫ Cp-E클래스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p> <p>⑬ Cp2클래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p> <p>⑭ Cp2-F클래스 :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p> <p>⑮ S-P클래스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 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p>	<p>클래스 추가에 따른 환매수수료 기재</p>	<p>A, Ae, C1, C2, C3, C4, Ce, W, I, S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Cp, Cp-E, Cp2, Cp2-F, S-P : 환매수수료 없음</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 추가	<u>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기재</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추가	<u>클래스 추가에 따른 보수 및 비용 기재</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클래스 추가	<u>클래스 추가에 따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 기재</u>
<b>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b>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u>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u>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법 개정사항 반영	<u>(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u>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b>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b>

	<p>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	--	--